■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당사자 구분		[ ] 신청인 [ ] 피신청인	
사건	사건번호	제 호(조정안 받은 날 : 년 월 일)	
	사 건 명		
	목 적 물 주 소		
수락 여부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수락
	*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락 시 ○표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거부
	* 거부란에 ○표하지 아니하거나, 아래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고 제출한 답변서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 시 ○표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직권 조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서를 발급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조정안을 수락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없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